2018. 9. 3 제정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19-약관- 040 (2019.02.25)

2019. 3.16 개정

「급여하나 통장」 특약

제1조 약관의 적용

「급여하나 통장」(이하 "이 예금" 이라 한다) 거래에는 이 특약을 적용하며, 이 특약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「예금거래 기본약관」 및「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약관」을 적용합니다.

제2조 예금과목

이 예금의 과목은「저축예금」으로 합니다.

제3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 또는 개인사업자로, 1인 1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.

제4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가입금액은 제한이 없습니다.

제5조 이자지급

① 이 예금의 이자는 매일의 최종잔액에 대하여 매 영업일 영업점 및 은행 홈페이지에 고시한 금리를 적용하며(휴일인 경우 직전영업일 고시금리), 최초 예금일(또는 원가일)로부터 원가일(또는 지급일)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기간으로 보고, 아래 기준일에 셈하여 익일(이하 '원가일')에 원금에 더합니다.

- 이자계산 기준일 : 매년 3월, 6월, 9월, 12월의 제3금요일

②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, 전환일부터 전환후 예금의 금리를 적용합니다.

제6조 청년 직장인 우대금리

① 이 예금 가입고객 중 만35세 이하 고객이 이 예금에 원가일이 속한 달의 전월말일 또는 해지일 전월말일을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(주1)가 입금되는 경우, 매일의 최종 잔액 중 1백만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 연 1.4%의 우대금리를 제5조의 금리에 더하여 적용합니다.

② 우대금리는 해당 고객이 만35세 초과후 첫번째 도래하는 결산시까지 제공됩니다.

제7조 수수료우대서비스

① 이 예금의 가입고객이 아래의 항목에 따라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충족월 다음달에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제공합니다. (이 예금을 통한 거래에 한 하여 제공)

1. **급여하나 우대** : 이 예금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 입금(주1) 시 수수료우대 Ⅰ(횟수제한 없음) 및 수수료우대 Ⅱ 총합 월5회 제공
2. **급여플러스 우대** : 이 예금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 입금 및 주거래이체실적(주2) 1건 이상 충족 시, 수수료우대 Ⅰ(횟수제한 없음) 및 수수료우대 Ⅱ 총합 월10회 제공

(주1) 급여 입금 : 타인으로부터 건당 50만원 이상 급여적요(급여, 월급, 봉급, 상여, SALARY, BONUS 등)

포함 입금 또는 급여지정일 전후 1영업일내 입금

(주2) 주거래이체실적 : KEB하나은행에서 가입한 본인명의 연금상품 이체(연금펀드, 연금신탁, 연금보험) 아파트관리비 출금, 하나카드/현대카드 결제대금(신용,체크), 하나카드/BC카드 가맹점대금, 공과금 출금, 본인명의 당행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(청년우대형 포함)

3. 하나멤버스 우대 : 하나금융그룹의 하나멤버스 회원인 경우 수수료우대 Ⅰ 총합 월10회 제공

(수수료우대 Ⅰ)

- KEB하나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마감후 현금인출수수료 및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
- KEB하나은행 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, 폰뱅킹(ARS)을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
- 납부자자동이체 및 타행자동이체 수수료 면제

(수수료우대 II)

- 타행 자동화기기를 통한 현금 인출수수료 면제(주3)
- 영업점 창구를 통한 타행이체 수수료 면제

(주3) 타행은 CD기 공동망 참여 금융회사로, 타행 점내 설치된 자동화기기에 한 하며, 은행 외부에 설치된 타행 제휴 CD기 및 한컴/효성/나이스 등 VAN사 CD기에서 출금하는 경우는 수수료면제가 제공되지 않음.

② 이 예금 신규 가입후 다음달까지는 요건 충족여부와 관계없이 수수료우대 Ⅰ 를 총합 월10회 제공합니다.
. 단, 가입월에 제7조 제1항의 수수료우대서비스 요건 충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가입후 다음달부터 수수료우대서비스를 적용합니다.

③ 다른 수수료면제통장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시, 전환하는 달의 수수료면제횟수는 기존 상품의 수수료 면제 잔여횟수를 적용하고, 익월부터 이 예금의 수수료우대서비스 요건에 따른 면제혜택을 제공합니다.

제8조 직장인 응원 서비스

이 예금 가입고객이 직장인 응원 서비스를 신청하는 경우, 수수료우대 Ⅰ(횟수제한없음) 및 수수료우대 Ⅱ (월 총5회)를 신청일로부터 6개월이 종료하는 달까지 제공합니다.

- 신청대상 : 휴직(육아, 인병) 또는 퇴직한 고객이 사유 발생월 전월 기준으로 과거 3개월동안 2개월이상 이 예금에 건당 50만원 이상의 급여입금실적(주1)을 보유한 경우
- 신청방법 : 휴직/퇴직후 3개월이내 영업점 창구를 통하여 사유별 증빙서류 제출
  (증빙서류(예시) : 육아휴직 및 인병휴직 확인서, 퇴직증명서 등 확인 가능한 서류)

제9조 상품전환

저축예금인 경우, 다른 예금에서 이 예금으로 전환 또는 이 예금에서 다른 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.